

‘북촌 한옥청’ 대관 규정

□ 대관안내

- 서울 공공한옥은 2001년부터 시작된 ‘북촌 가꾸기 사업’의 하나로 멸실 위기에 있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서울시가 매입하여 운영하는 한옥으로, 주민과 방문객, 일반시민에게 한옥의 우수성 홍보, 체험 등 한옥보전 및 진흥을 목적으로 개방
- ‘북촌 한옥청’은 2017년부터 **시민들에게 한옥 관련 전시 대관 용도의 ‘공유한옥’**으로 제공함으로써 **일반시민의 한옥 이용기회 확대 및 한옥문화 콘텐츠 확장성 제고**에 기여
- 시설개요
 - 위치 : 종로구 북촌로12길 29-1(가회동 11-32)
 - 총 면 적 : 대지 423.1㎡(128평), 건축면적 150.8㎡(45평)
 - 운영시설 : 총 3동(안채, 문간채, 행랑채), 앞마당 등
 - 운영시간 : 화요일 ~ 일요일 10:00~18:00 (월요일 휴관)
 - ※ 대관 이용시간은 운영시간 내에만 가능
 - 대관공간 : 전시실 약 42㎡(12평), 휴게 및 세미나실 약 62㎡(18평)
 - 대 관 료 : 무료



〈위치도〉



〈내·외부 전경〉

□ 대관절차

- 대관 신청 접수 기간(매년 5월, 11월) 중 신청서(양식)를 한옥 정책과에 접수
 - 메일 : white2@seoul.go.kr
 - 팩스 : 02-2133-0828 ※ 팩스 발송 시 유선으로 수신여부 확인 필요
- 한옥정책과에서 대관 적정성 검토 후, 대관 허가여부 회신 및 대관 시 준수사항 안내

□ 대관대상

대관용도	세부내용	이용시간(기간)
전시	- 한옥(한옥지역) 교육 및 홍보, 연구, 학술 목적의 전시 행사 ※ 전시기간 내 안내를 위한 2명 이상의 상주인력 배치요망	1주 ~ 3주 (협의사항)
전시 관련 포럼/워크숍	- 전시와 관련된 포럼 또는 워크숍	1시간 ~ 5시간

※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므로 이용시간(기간)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대관제한

- 서울 공공한옥의 공공성과 품위 손상 및 왜곡시킬 우려의 경우
 - 영화, 드라마, 광고, 예능프로그램, 인터뷰 등 촬영을 위한 대관
 - 참가비를 받아 진행하는 포럼, 세미나, 워크숍, 체험행사 등
 - 상품, 유료 서비스의 홍보와 판매 목적의 행사
- 건물 및 부속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
 - 음식물 조리 등 화기사용
 - 건물 및 부속 시설물의 훼손 우려
- 소음, 소란, 선동 등으로 주민과 방문객의 이용 및 관람에 불편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경우
 - 대규모 인원 집객이 예상되는 행사
 - 소음이 발생하는 행사 및 공연

- 기타 사업부서에서 서울시 공공한옥의 운영목적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

※ 대관 규정 미준수 및 민원이 발생한 대관 건에 대해서는 향후 복촌 한옥청 등 서울 공공한옥 이용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□ 대관 시 준수사항

- 대관 공간은 용도에 따라 전시실과 휴게 및 세미나실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. ※ 전시물은 전시공간에만 설치 가능
- 대관자는 현수막 설치(출력물 부착), 부스 설치 등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.
- 대관자는 협의되지 않은 장비 등의 시설 설치 또는 취재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
- 문이나 창을 임의로 여닫거나 건물 내외 벽에 못질,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. 만약 훼손될 경우 대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.
- 대관자는 공간 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물품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.
-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, 특히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
-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.
- 대관자는 시설 사용에 있어,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.
- 다른 관람객이나 인근 주민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를 금합니다.
- 전시 대관의 경우, 전시기간 내 전시 안내를 위한 운영인력을 최소 1명이상 배치해야 하며, 화환 반입 및 오프닝(다과 등) 행사는 제한됩니다.
- 대관 종료 후 청소 및 쓰레기는 대관자가 직접 처리하고, 사용한 물품은 원위치에 정리해야 합니다.

- 대관취소는 사용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한옥정책과로 통보해야 합니다.

□ 대관허가 취소

- 대관 허가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거나, 사용 내용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
- 대관자가 대관허가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·전대하였을 경우
-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
- **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** ※ 해충에 취약한 목조건물의 특성상 음식물 반입 제한
- **과도한 전기사용 및 음향 사용으로 주민과 방문객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**
- 주민과 관람객 등에게 불편 사항 등 민원사항이 접수되었을 경우
- 공간 사용수칙과 대관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에 개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- **당초 사용 허가된 내역과 다른 시설물을 사전 협의하지 않고 반입한 경우**
- **공간의 성격과 규모에 맞지 않는 전시로 공공한옥의 경관과 운영 상 훼손을 주었을 경우**
-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공간사용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